□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

제1조 (총칙)

본 규정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(이하 수석부회장)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거인)

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평의원으로 한다.

제3조 (후보자)

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현직 부회장
- 2. 정회원으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
제4조 (선거관리)

4-1.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다.

4-2.

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
4-3.

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.

4-4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여 공고한다.

4-5

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과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.

4-6.

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선거인단에게 알리고 학회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회원에게 알린다.

제5조 (투표)

5-1. 우편 투표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우편을 통하여 선거인단에게 송부한다.
-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에 기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송부한다.

-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찬반 기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송부한다.
- ④ 기표된 투표용지는 잠금 장치된 보관함에 넣어 개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까지 보관한다.

5-2. 온라인 투표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인단에게 학회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거방법을 공지한다.
-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를 선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투표한다.
 -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찬반 선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투표한다.
- ④ 온라인 투표결과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표하고 당일 공고한다.

제6조 (당선자의 결정)

- 1.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개표관리업무를 관장한다.
- 2.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3.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투표하여야 하며,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.
- 4.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대하여 확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4년 수석부회장 선거 일정

일정	업무내용
2023. 05. 17(수/이사회)	선관위 위원 추천 및 구성
2023. 07. 14.(금)	선관위 규정 확정, 선거일정 확정
2023. 09. 01.(금)	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공고
2023. 09. 04.(월) 09:00 ~ 09. 21.(목) 24:00	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
2023. 9. 25.(월)	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 공고, 투표 방법 및 일정 공고
2023. 9. 26.(화) 09:00 ~ 10. 17.(화) 18:00	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기간
2023. 10. 17.(화) 18:00	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마감, 투표 결과 개표 및 발표
정기총회 (2023. 11월 예정)	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)은 부회장, 감사, 이사회 구성 및 정기 총회에서 신임임원 인준
2024. 01.	임원 취임승인 신청 및 법원 등기 2024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임원 인수인계

[※] 선관위원장이 추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.